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숭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60

발의연월일: 2022. 12. 27.

발 의 자:황보승희·김미애·조수진

윤창현 · 최영희 · 박덕흠

안병길 • 백종헌 • 서병수

배현진 · 정동만 · 구자근

이채익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경우 상해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스토킹행위 상대방이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신청이 아닌 강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추적을 가능하도록 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추적을 추가하고,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의무

적으로 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

법률 제 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을 "긴급응급조치를"로 한다.

- 3.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 ② 사법경찰관은 제3조제2호에 따라 범죄수사를 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 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	
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	
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	
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	
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
	<u>적</u>
<u><신 설></u>	② 사법경찰관은 제3조제2호에
	따라 범죄수사를 하는 경우 스
	토킹행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
	다)를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u>③</u> <u>긴급응급조치</u>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	<u> </u>
<u>다)를</u>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	

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	
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	
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	
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